

1977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가계자산조사지침

1978

* * * 목 차 * * *

1. 조사개요.....	1
가. 조사목적.....	1
나. 조사의 법적근거.....	1
다. 조사기준일 및 조사기간.....	1
라. 조사범위 및 대상.....	1
마. 조사사항.....	3
바. 조사방법.....	4
사. 집계 및 공표.....	5
아. 조사용어의 정의.....	5
2. 조사담당자 및 지도구책임자의 업무.....	7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7
나. 조사담당자의 업무.....	8
다. 지도구책임자의 업무.....	8
3. 가구명부 보완요령.....	11
4. 조사표 기입요령.....	16
가. 일반적인 사항.....	16
나. 갑조사표 기입요령.....	17
1) 조사표 표지기입요령.....	17
2) 갑함속조사표 기입요령.....	27

1. 조 사 개 요

가. 조 사 목 적

국부조사의 일반적인 목적은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의 존재량을 파악하여

- 1) 경제적 국력을 파악하고 국제비교를 행하며
 - 2) 자본축적의 정도를 제측하여 그간의 개발성과를 측정하고
 - 3)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자본계수를 산출하고
 - 4) 국민계정을 완성함으로써 경제개발계획, 국토건설계획 등 제반 경제시책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특히 이번 조사는 제 5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조사의 법적근거

통계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정통계 제 21-4 호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법정기본 통계조사인 것이다.

다. 조사기준일 및 조사기간

조사기준일 : 1977 년 12 월 31 일현재

조사기간 : 1978 년 3 월 10 일 ~ 4 월 10 일

라. 조사범위 및 대상

1) 조사지역의 범위

조사지역은 조사기준 시점 현재 우리나라 주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는 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중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조사대상의 범위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구내에 상주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가구라 함은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적인 생활 단위를 말한다.

단, 다음의 가구는 조사대상가구에서 제외한다.

가) 군대의 시설내, 교도소, 유치장 및 소년원내에 거주하는 가구.

나) 기숙사, 양로원, 합숙소, 기타수용소등의 집단가구.

다) 외국의 외교공관원, 사절단원 및 군인가구.

단, 여행이나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국내에 1년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및 해외에 체류중인 내국인 가구가 한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은 조사한다.

3) 조사자산의 범위

대상가가가 가계를 위하여 소유하는 가계자산중 내용년수가 1년이상인 유형자산을 주거용건물과 일반가재품목으로 구분조사한다.

가) 주거용 건물

주택은 물론 주택이외의 주거용건물도 조사한다.

나) 일반가재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인 가계용 유형자산으로

- (1) 갑 품목 - 평균값가 5,000 원이상에 상당하는 내구재
- (2) 을 품목 - 준내구재 및 5,000 원미만의 내구재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다음의 자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서화, 골동품, 동식물, 사업용자산, 농업용기구.

마. 조 사 사 항

1) 가구에 관한 사항

- 가) 영농구분
- 나) 가구인원수
- 다) 가구주 연령
- 라) 가구주 직업
- 마) 가구의 연간소득
- 바) 가구의 연간지출
- 사) 가구소재주소

2) 건물에 관한 사항

- 가) 주거구분
- 나) 건축구조
- 다) 연건평 및 대지면적
- 라) 취득시기

3) 내구재에 관한 사항

- 가) 갑 품목조사
 - (1) 품목 및 규격
 - (2) 구입상태
 - (3) 구입(입수)시기 및 수량

나) 을 품목조사

(1) 품목 및 규격

(2) 보유수량

※ 갑 및 을 조사대상가구

가구명부에 의거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중 가구명부 좌측 빈칸에 「/」표된 가구는 갑 조사표를, 「×」표시된 가구는 을 조사표를 조사한다.

※ 조사표의 구성

1. 갑 조사표

가구명부 좌측 빈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갑 품목분류표에 따라 조사한다.

가. 조사표 표지 : 가구 및 건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나. 갑 품목조사표 : 갑 품목분류표에 따라 조사한다.

다. 주택부대시설 : 보일러, 상수도등 주택에 부착된 시설을 조사한다.

2. 을 조사표

가구명부 좌측 빈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을 품목분류표에 따라 조사한다.

가. 조사표 표지 : 갑 조사표와 동일

나. 을 품목조사표 : 을 품목분류표에 따라 조사한다.

다. 주택부대시설 : 갑 조사표와 동일

바. 조사 방법

조사담당자가 표본가구로 선정된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주택에 관한 사항 및 품목분류표에 명시된 품목을 조사표에 직접 기입하는 타계식 면접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한다.

사. 집계 및 공표

기계집계후 국부통계 가계자산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 공표한다.

아. 조사용어의 정의

1) 가 구

본 조사에서 가구라 함은 거주와 가계를 같이하는 경제적 가족 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한사람이라도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독립적인 가계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가구로 본다.

2) 가 구 원

가구원이란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조사구내에서 3개월이상 살았거나 앞으로 3개월이상 살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하숙인, 가사사용인 및 영업상 사용인)인 경우도 주인가구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가구의 가구원으로 본다.

3) 가 구 주

호적 및 주민등록상의 호주,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원중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을 말하며, 사실상 가계의 책임자를 말한다.

단, 자취를 하거나 혈연관계가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준가구인 경우에는 그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

4) 농 가

농가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가구로서 다음 각 사항의 하나에만 해당해도 농가이다.

- 가)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논, 밭, 수원지등의 총면적 300평 이상을 직접 경영할 때.
- 나) 대가축(소 또는 말)을 1마리이상 사육할 때(단, 운반용은 제외).
- 다) 중가축(돼지, 염소, 양등)을 도합 3마리이상 사육할 때.
- 라) 가금(닭, 오리) 30마리 또는 소 가축(토끼등) 40마리 이상 사육할 때.
- 마) 고등원예(비니루온상의 시설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것) 또는 특용작물(송이버섯, 인삼, 담배등)을 100평이상 재배할 때.
- 바) 과수나 묘포등을 200평이상 재배할 때.
- 사) 5통이상의 꿀벌을 쳐서 꿀을 생산할 때.
- 아) 누에를 129 이상 사육하여 누에고치를 생산할 때.
- 자) 온실재배를 영리적으로 할 때

2. 조사담당자 및 지도구책임자의 업무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 1) 조사담당자는 조사에 임함에 있어 시종 친절 성실,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말 것이며, 본 조사의 취지와 본 조사가 통계 목적의 세금등 타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조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2) 조사담당자는 조사가구를 방문할 때에는 시간의 선택에 각별히 유의하여 식사시간과 야간방문을 피하여야 하며 또한 조사가구가 관혼상제등으로 조사응답에 적절치 못한 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재방문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 3) 조사에 있어서 누락, 중복, 허위, 조작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주관적 판단과 기입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 4) 조사응답자는 응답능력이 있는 가구주 혹은 그 가구의 주부가 되도록 한다.
- 5) 응답거절가구의 발생시는 지도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2회이상 설득하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는 지도구 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가구를 대체하도록 한다.
- 6) 특히 유의할 것은 1978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내구재 및 피복류등은 조사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조사일 현재에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77년말까지 소유했던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 주택의 경우에는 신축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한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하나 1978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경우라도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한 주

택은 조사하여야 한다 .

나. 조사담당자의 업무

- 1) 조사용품 (조사표류 및 사례품) 을 수령하고 사례품을 조사가구에 배부하여야 한다 .
- 2)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인사장을 배부하고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3) 최초 조사하여야 할 거처를 방문할 때에는 거처내의 변동가구를 확인하여 가구명부를 보완하여야 한다 . (11 P. 가구명부 보완요령 참조)
- 4) 만약 조사불응가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대한 설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계속 불응시에는 담당 지도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
- 5) 조사가 완료된 경우 품목분류표에 있는 품목 및 규격에 따라 품목 부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 6) 부호기입이 완료된 가구는 소정된 기일내에 담당 지도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지도구 책임자의 업무

- 1) 조사담당자의 조사업무 전반에 걸쳐 지도, 감독을 하며, 조사상 발생하는 의문사항을 해결하여야 한다 .
- 2) 담당조사구의 동장 및 통, 반장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조사담당자가 이들의 협조를 받아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조사불응가구의 설득 및 대체가구의 선정, 대체가구명부의 작성

가) 조사담당자로부터 응답거절가구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받은 즉시 조사담당자를 대동하고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2 회 이상 설득하여야 한다.

나) 2 회 이상 설득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가구명부에 의거 생활 수준이 비슷한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토록 조치하고 대체가구명부를 작성 제출한다. (10P. 대체가구명부 기입예시참조)

4) 조사용품 (조사표류 및 사례품) 을 수령하여 해당 조사담당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5) 조사표 및 가구명부를 접수하여 내용검토를 완료한 후 소정 기일 (4 월 15 일) 내에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P. 조사표 내용검토요령 참조)

기입예 :

대 체 가 구 명 부

조사구 번호	조 사 대 상 가 구			대 체 가 구		
	가구 번호	주 거 상 태	가구 원수	가구 번호	주 거 상 태	가구 원수
304	4-1	자가, 연와조, 연건평 24평, 주택820만원	4	12-1	자가, 연와조, 연건평 27평, 주택900만원	5
307	1-2	전세 500,000 원 방 1 개	3	3-3	전세 450,000 원 방 1 개	2
307	17-1	전세 1,200,000 원 방 3 개 (독채)	8	12-4	전세 1,500,000 원 방 4 개 (독채)	10
693	21-1	관공사택, 연와조, 건평 17평, 주택450만원	6	24-1	무상, 연와조, 건평 20 평, 주택500만원	5
702	11-4	월세 13,000원 방 1 개	6	14-2	월세 15,000 원 방 1 개	5
	-			-		
	-			-		
	-			-		
	-			-		
	-			-		
	-			-		
	-			-		
	-			-		
	-			-		
	-			-		

※ 주거상태란에는 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구분과 건축구조, 연건평, 주택가격 등 기타 참고사항을 상세히 기입한다.

대구 지도구책임자 최 명 수 ①

3. 가구명부보완요령

가구명부는 표본가구의 지정과 조사시 응답불응가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가구의 선정등에 필요한 명부이므로 최초로 조사가구를 방문할 때 전입가구, 전출가구, 누락가구 및 착오가구를 확인하여 다음 요령에 의하여 가구명부를 보완,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입가구의 발생

1) 거처를 방문하면 우선 그 거처에 이사온 전입가구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가구가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하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가구명부 하단에 전입가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작성한다.

2) 작성요령

가) 표본번호

가구명부를 보완할 시는 기입하지 않는다.

나) 가구번호

해당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이 경우 가구번호는 최초 가구명부 작성시에 사용된 마지막가구번호 다음번호를 기입한다.

다) 가구주 성명

호주 및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원중에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으로 사실상 가계의 책임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라) 가구주 직업

가구주의 근무처 또는 사업체명(일정한 근무처가 없는 경우는 장소)과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상세히 기입한다.

마) 가구원수

조사 기준 시점 현재 가계를 같이한 가구원수를 기입한다.

바) 주거구분

자가, 관공사택, 전세, 월세, 주택이외의 5개 항목중 하나를 기입하되 자가인 경우는 1을, 관공사택인 경우는 2를, 전세인 경우는 3을, 월세인 경우는 4를, 주택이외의 경우는 5를 각각 기입한다.

사) 건축구조

주로 외벽의 주된 재료를 기준으로 다음 8가지 항목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되 주인가구 또는 대표가구(거처내의 가구중 첫번째 가구)에 대하여만 기입한다.

- (1) 철근콘크리트조
- (2) 연와조
- (3) 석조
- (4) 블록조
- (5) 토벽조
- (6) 목조
- (7) 목골몰탈조
- (8) 간이목조 또는 간이목골몰탈조

아) 연건평

- (1) 주인가구 또는 대표가구의 경우는 다른 가구에 세준 평

수를 포함하여 총 연건평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 (2) 세든 가구에 대하여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평수와 방수를 기입한다.

자) 주택 가격

주거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기입하여야 한다.

- (1) 자 가 : 건물에 대한 현 시가를 기입한다.
(2) 관공사택 : 건물에 대한 현 시가를 기입한다.
(3) 전 세 : 전세 보증금을 기입한다.
(4) 월 세 : 매월 지불하는 월세를 기입한다.
(5) 주택이외 : 기입하지 않는다.

차) 비 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 3) 해당 거처가 갑 조사거처인 경우에는 가구명부 좌측 빈칸에 「 / 」표를, 을 조사거처인 경우에는 가구명부 좌측 빈칸에 「 X 」표를 하여야 한다.
- 4) 작성이 완료된 가구는 지정된 갑 또는 을 조사표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나. 누락가구의 발생

전입가구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는 가구명부에 기입되었어야 할 가구가 기입되지 않은 누락가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표본으로 추출된 거처에 가구명부상으로는 가구가 없더라도 실제로 가구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다시한번 가구의 유무를 확인하여 누락가구가 발생하였을 때는 11P 전입가구의 발생의 경

우와 같이 가구명부를 보완한 후 해당 갑 또는 을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출가구의 발생

최초가구명부 작성시에는 거처내에 살던 가구가 그 후에 전출한 경우에는 가구명부중 가구번호란부터 주택가격란까지 붉은선으로 긋고 비교란에 「전출일자」와 「전출」이라 기입한 후 조사하지 않는다.

라. 착오가구의 발생

최초 가구명부 작성시에도 없었던 가구가 착오로 인하여 가구명부에 기입되어 있을 때에는 전출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번호란부터 주택가격란까지 붉은선을 긋고 비교란에 「발견일자」와 「착오」라 기입한 후 조사하지 않는다.

마. 조사불응가구의 발생

가구의 사정 또는 통제인식 부족에 의하여 조사를 불응하는 가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지도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그 후 대체가구를 선정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가구명부를 보완한다.

1) 갑 조사가구가 불응하였을 때 이에 대한 대체가구를 선정받은 경우는 가구명부 좌측 빈칸 「/」 표시된 것을 ○표하여

「∅」표와 같이 표시한 후 비고란에 대체가구의 가구번호와 불응이라 기입한다.

- 2) 을 조사기구가 불응하였을 때 이에 대한 대체가구를 선정받을 경우는 가구명부 좌측 빈칸 「×」표시된 것을 ○표하여 「⊗」표와 같이 표시한 후 비고란에 대체가구의 가구번호와 불응이라 기입한다.

바. 대체가구의 발생

갑 또는 을 조사를 하지 않은 가구를 지도구책임자에게서 대체가구로 선정받았을 경우에는 대체가구의 표본번호 앞 빈칸에 「/」 또는 「×」표를 한 후 비고란에 불응한 가구의 가구번호를 기입하고 대체가구라 기입한 후 갑 또는 을 조사표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표 기입요령

가. 일반적인 사항

- 1) 조사표의 기입은 청색 또는 흑색 볼펜을 사용하여 하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타사항은 한글로 정확히 기입하되 한글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사항은 한자 또는 영문을 병기한다.
- 2) 기입도중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정정은 복선(=)을 긋고 정정하도록 한다.
- 3) 동일한 내용을 여러차례 기입할 때는 「상동」, 「"」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지 말고 계속 기입하도록 한다.
- 4)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 5) 내구재 품목의 조사는 순수히 가계용으로 취득한 자산에 한하며 가계와 사업등에 병용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가계용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큰 자산만을 가계자산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 6) 타인에게 대여하였거나 전당포등에 저당되어 있는 것도 조사대상가구의 자산으로 하고, 반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품목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 7) 완불하지 않은 월부구입품도 조사하여야 하며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현품을 인수받지 않은 것도 조사하여야 한다.
단, 주택의 경우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부터 조사한다.
- 8) 가구원에 포함된 식모, 하숙생등 동거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누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히 유의하여 조

사한다.

- 9) 결혼 또는 분가시 본가로부터 받은 물건의 구입시기는 가능한 경우에는 본래의 구입시기를 기입하여야 하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결혼일 또는 분가일을 기준으로 기입할 것이며 갑 품목인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신품, 중고품으로 구분한다.

나. 갑 조사표 기입요령

1) 조사표 표지 기입요령

가) 조사구 번호

해당 (가구명부) 조사구 번호를 기입한다.

나) 조사가구번호

해당 (가구명부)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다) 영 농구분

농가의 정의에 따라 농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 농가에,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2] 비농가에 ○표를 한다.

라) 가구원수

조사기준 시점현재 가계를 같이한 가구원수를 기입한다.

마) 가구주 연령

가구주의 만 연령을 기입하되 호적과는 관계없이 77년 12월 31일현재의 사실상 만 나이를 기입한다.

(41 P. 연령대조표 참조).

바) 가구주 직업 (근무처 또는 자영사업 명칭)

이 란은 가구주의 근무처 또는 사업체명 (일정한 근무처가

없는 경우에는 장소)과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예 : 동대문시장 - 지게품팔이,

제일연탄공장 - 배달원,

서울산업 (화물운송) 주식회사 - 화물차운전수,

가나무역회사 - 경리사원

사) 가구의 연간 소득

조사표 표치이면에 있는 가구소득에 관한 사항을 먼저 조사한 후 가구의 연간소득합계란에 기입된 금액을 그대로 기입한다. (24 P. 가구소득에 관한 사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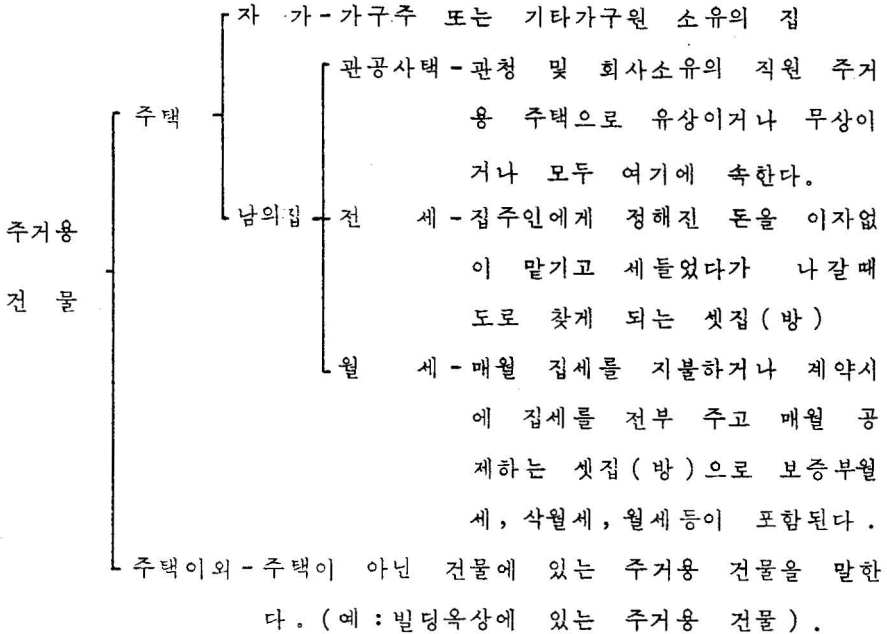
아) 가구 소재 주소

해당 가구에서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말하며 가구의 소재지를 상세히 통·반까지 기입하고 해당 행정구역 단위에 ○표를 한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명과 몇동 몇호인가를 정확히 기입한다.

자) 주거 구분

자가, 관공사택, 전세, 월세, 주택이외의 5개항목중 어느 하나에 ○표가 되어야 하며 주택이외일 경우에는 다시 자가와 임차를 구별하여 해당란에 ○표한다.



차) 주거용 건물

이러한 주거구분중 「 1. 자가」에 해당하든가 「 5. 주택이외중 ①자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조사한다.

단, 현재 살고 있는 집은 「 1. 자가」 또는 「 5. 주택이외의 ①자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 공가, 셋집 또는 신축중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표지 이면의 「거주지이외의 주거용 건물 소유」란에 그 내용을 기입한다.

(1) 전용주택, 겸용주택, 주택이외의 구분.

주거구분중 「 1. 자가」인 주택이 주거전용으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전용주택란에, 주택의 일부분이 상점, 병원등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②겸용주

택란에 각각 ○표를 하고 「 5. 주택의외 [1]자가」인 경우는 [3]주택의외란에 ○표를 한다.

(2) 건축구조

주로 외벽의 주된 재료를 기준으로 [1]철근콘크리트조, [2]연와조, [3]석조, [4]블록조, [5]토벽조, [6]목골물탈조, [8]간이목조 또는 간이목골물탈로 중 한곳에 ○표를 한다.

(가) [1]철근콘크리트조

고급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등과 같이 기둥을 철근콘크리트로 세우고 그 사이에 세멘벽돌, 블록 또는 연와벽돌 등으로 벽을 쌓은 집.

(나) [2]연와조

연와벽돌, 세멘벽돌로 벽을 쌓은 집.

(다) [3]석조

인조석, 자연석등으로 벽을 쌓은 집.

(라) [4]블록조

세멘블록으로 벽을 쌓은 집.

세멘블록 위에 타일등을 붙인 경우에도 이 란에 포함한다.

(마) [5]토벽조

흙벽돌로 벽을 쌓은 집.

흙벽돌 위에 세멘트를 바른 경우에도 토벽조에 ○표한다.

(바) [6]목조

일본집과 같이 기둥 및 벽을 모두 나무로 붙인 집을 말한다.

(사) ㉑ 목골물탈조

주로 한식집으로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흙 또는 회, 블록, 벽돌등으로 벽을 쌓은 집.

(아) ㉒ 간이목초 또는 간이목골물탈조

판자집, 루핑집, 스테이트벽등으로 벽을 쌓아 임시로 기거할 수 있도록 건축된 집을 말한다.

(3) 연 건평 및 대지면적

건평 및 대지면적은 등기부, 가옥대장 또는 토지대장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총면적을 말하며 연건평의 경우 건물의 일부에 붙여 증축을 한 경우는 그 구조로 보아 완전히 건물의 일부분이 된 경우에만 건평에 합산하고 판자, 합판, 비닐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설된 부분은 제외한다.

(가) 건물 □층

주택의 층수를 기입한다.

이때 아파트의 경우는 사는 층수에 관계없이 1층으로 기입하며 사무용빌딩등 주택이외의 건물 옥상에 지은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도 주거용 부분만을 계산하여 층수를 기입한다.

(나) 연 건 평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면적과 병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단, 주택이외의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부분만을 기입한다.

① 주거 면적

다른 가구에 주거의 목적으로 세를 준 경우에도 실

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그 면적을 합하여 기입한다.

※ 농촌의 양곡창고, 외양간 및 다락등은 제외하고 별도로 있는 것이라도 연탄광, 화장실, 목욕탕등과 지하실은 포함한다.

② 병용면적

주거의 목적으로 건축된 주택으로서 상점, 병원등과 같이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기입하되, 방, 마루와 같이 주거의 목적으로 건축된 부분에서 가내수공업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주거면적에 합산하며 이 병용면적은 다시 자기가 사용하는 면적과 타인에게 대여하여 준 면적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③ 참고사항

$$\begin{aligned} 1 \text{ 평} &= 6 \text{ 자} (182 \text{ cm}) \times 6 \text{ 자} (182 \text{ cm}) \\ &= 36 \text{ 평방자} (3.3 \text{ m}^2) \end{aligned}$$

(나) 대지면적

건물에 부속된 대지면적을 합한 전체 대지면적을 기입한다.

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는다.

(4) 취득시기

(가) 취득 또는 신축시기

집을 직접 지었거나 신축한 집을 구입하였을 때는 그 신축년도를, 살던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득년도를 정확히 기입한다.

※ 속등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방전 (1945 년 이전)

해방후 ~ 6.25 (1950 년) 이전

6.25 이후 ~ 4.19 (1960 년) 이전

4.19 이후 ~ 5.16 (1961 년) 이전

5.16 이후

등과 같이 역사적 사실에 의하거나

자녀의 연령,

결혼일의 기준일,

관혼상제의 기준일.

등에 따라 그 취득년도를 파악하여 기입한다.

이때 1900 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19

년의 「 19 」를 두줄로 지우고 연도를 기입한다.

예 : 1874 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¹⁸~~19~~ 74 년

(나) 취득시의 신·구옥구분

집을 직접 지어서 살거나 또는 새로 지은 집을 샀을
경우에는 ①신옥에, 다른 사람이 살던 집을 샀을
경우에는 ②구옥에 각각 ○표를 한다.

(다) 취득시까지의 경과년수 (신옥제의)

(지은지 몇년된 집을 샀는가?)

신·구옥구분에서 신옥에 해당하는 가구는 취득시까지의
경과년수가 ○년이므로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구옥에
해당하는 가구만 기입하되 건립시부터 구입당시 까지의
경과년수를 기입한다.

카) 조사에 관한 사항

실제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한 날을 기입하고 응답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및 성명, 조사담당자, 지도구책임자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타) 거주지 이외의 주거용건물 소유 (자가인 경우만)

이 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이외에 다른 장소에 공간, 셋집 또는 신축중의 형태로 자기 소유의 집이 있는 경우에 18 P 및 19 P의 가구소재주소 및 주거용 건물 기입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각 란을 기입한다.

파) 가구소득에 관한 사항

이 란은 조사표 표지에 있는 가구의 연간 소득란을 조사하기 위한 보조란으로서 조사가구의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기타 가구원의 소득), 주사업소득, 부업소득, 기타소득별로 조사하여 가구의 연간 소득을 산출, 조사표 표지란에 기입토록 하였다.

따라서 이 란을 조사할 때에는 먼저 부문별로 월간금액을 조사하고 월간금액에 12를 곱하여 연간금액으로 환산, 연간금액란에 기입한 후 각 부문별 연간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의 연간소득합계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단, 이때 월별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소득만을 조사한다.

(1)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기타 가구원이 관공서, 회사, 공장등에서 봉급이나 상여금 또는 사례금등으로 받은 일체의 돈과 남의 상점 또는 남의 집, 취로사업장등에서 일을 해주고 받

은 품삯, 간조, 노임등은 받았을 경우, 남의 짐을 운반해 주고 받은 품삯등을 가구주소득과 기타가구원소득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때 소득이 있는 기타가구원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조사하여 기입하며 상여금의 경우 추석보너스 100%, 연말보너스 200%등과 같이 그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금액에 관계없이 기입회수를 기입한 후 연간 총 상여금 지급액을 합산하여 연간 금액란에 기입한다. 또한 가구원에 포함되는 하숙생, 가정부등 동거인에 속하는 가구원의 소득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주 사업소득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 되는 사업(농업, 상업, 공업, 기타)을 경영하므로써 얻어지는 수입중 경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조사한다.

(3) 부업소득

농가 또는 비농가에서 부업으로 가마니짜기, 누에치기, 꼴벌치기, 흘치기, 새끼꼬기, 수예, 편물등의 일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중 경영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이란에 기입한다.

(4) 기타소득

조사가구가 다음과 경우에 수입을 얻었을 경우에는 이란에 조사가 되어야 한다.

(가) 빌려준돈의 이자를 받았을 경우

(나) 주식(증권)의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다) 집 (방) 또는 땅을 빌려주고 세를 받았을 경우

(라) 남에게 생활비로 보조받았을 경우

(마) 연금 또는 보험금을 탔을 경우

(바) 구호양곡을 받았을 경우 이를 싯가로 환산한 금액 .

※ 주의할 것은 다음 경우와 같이 수입을 얻었을 경우는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사) 은행에서 예금을 찾은 경우

(아) 제를 탔을 경우

(자) 빌려쓴 경우나 빌려주었던 돈을 받았을 경우

(채) 부동산, 유가증권을 팔았을 경우

(5) 가구의 연간소득합계

근로소득 (가구주소득 또는 기타 가구원소득), 주사업소득, 부업소득, 기타소득등으로 기입된 금액을 연간금액으로 총합산한 후 이 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다시 조사표 표지에 있는 가구의 연간소득란에 천원단위만 기입하다 .

하) 가구의 연간지출에 관한 사항

가구의 월간 평균 지출금액을 파악하여 기입하고 이를 12로 곱하여 가구의 연간 지출금액을 산출하여 기입한다 .

특히 다음 사항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 식료품비

(2) 주거비 - 방세, 수도료, 주택수리비, 가구집기구입비

(3) 광열비 - 전기료, 연탄값

(4) 피복비 - 의복구입비등 기타피복비

(5) 잡비 - 의료비, 교양오락비, 담배, 교통통신비 .

(6) 교육비 - 납입금, 문방구류구입비

(7) 조세 및 기타공과금

2) 갑 품목조사표 기입요령

가구명부의 표본번호앞 빈칸에 「/」 표시 되어 있는 가구에 대하여 갑 품목분류표에 기재된 품목에 따라 조사한다.

가) (매중 매) - 갑 조사표에 대한 총 매수중 몇번째 매수인가를 기입한다. 즉, 갑 조사표를 3매조사한 가구가 있다면 (매중 매), (매중 매), (매중 매) 로 기입한다.

나) 부호 기입란 - 지정된 품목부호를 기입한다.

다) 품목 및 규격

(1) 조사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품목 및 규격을 기입하여야 하는데 품목분류표와 상이한 품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품목, 크기, 품질, 재료, 모양, 성능, 용도, 국산, 외국산, 등을 참고로 기입한다.

(2) 같은 품목이라도 규격이 현저히 다르거나 구입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줄을 달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기입예시 참조)

라) 구입상태 - 최초 구입하였을때 신품으로 구입하였으면 ①에 중고품으로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②에 각각 ○표를 한다. 남에게 얻었을 경우에도 신품으로 얻은 것은 ①에, 중고품으로 얻은 것은 ②에 ○표한다.

마) 구입(입수)시기 및 수량

이 란에는 품목별로 취득한 시기에 따라 그 취득수량을

기입하고 제란에 그 품목의 전체보유수량을 기입한다.

바) 합 계

각 구입(입수) 시기별 총합계를 페이지별로 작성 기입한다.

3) 주택 부대시설 기입 요령

가) 이 란은 실제조사 대상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것은 물론 거주지이외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도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주택에 부착되어 되어있는 양복장, 차단스, 신장, 찬장, 샐레리아 등의 가구는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갑 품목조사표에 조사하여야 하며 이 란에 조사되어서는 안된다.

(1) 부호기입란

품목분류표의 마지막페이지의 주택부대 시설란에 기입되어 있는 품목부호를 기입한다.

(2) 품 목

이 란에 기입된 품목을 조사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가) 연탄보일러

규격에 관계없이 연탄보일러가 1대 있으면 설치년도에 수량 1을 기입한다.

(나) 경유보일러

난방설치가 되어 있는 방 또는 거실등의 종난방평수를 설치년도 해당란에 기입한다.

예 : 방 4 개 - 9 평

거실 1 개 - 3평인 경우 해당 설치년도란에 12를 기입한다.

(다) 우 물

우물의 숫자를 설치년도란에 그 수량을 기입한다 .

(라) 수동식 펌프

수동식으로 되어있는 펌프수를 해당 설치년도란에 수량을 기입한다 .

(마) 자동펌프

펌프에 자동모터와 수도꼭지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도꼭지수를 해당 설치년도란에 기입한다 .

만약 자동펌프 설치 이전에 이미 설치하였던 수도꼭지가 있다면 자동펌프 설치년도에 포함하고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각각의 설치년도란에 그 수량을 기입한다. 특히 유의할 것은 수동식과 자동펌프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동펌프에 조사한다 .

(바) 상 수 도

설치년도란에 수도꼭지수를 기입한다 .

(사) 세 면 기

세면기의 수를 설치년도란에 기입한다 .

(아) 수세식 변기

수세식 변기 및 소변기의 수량을 해당 설치년도란에 기입한다 .

(자) 정 화 조

단독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와 같이 공동정화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세식 변기만을 조사한다 .

(차) 세 멘 쓰레기통

세멘트로 만든 쓰레기통의 숫자를 말하며 주택에 완전히 부착된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가) 욕 조

목욕탕내 설치되어 있는 욕조의 숫자를 설치년도란에 기입한다.

(나) 샤워시설

목욕탕내에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숫자를 설치년도란에 기입한다.

(3) 설치년도 및 수량

(가) 품목별로 설치한 년도에 따라 그 수량을 기입하고 그 품목의 전체 설치 수량을 기입한다.

(나) 주택구입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품목은 사실상의 설치년도란에 기입되어야 하나 년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 기주지이외의 주거용 건물란에도 위의 기입요령과 동일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다. 을 조사표 기입요령

을 조사표는 을 품목조사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을 품목분류표에 따라 조사하는 조사표를 말한다.

1) 조사표 표지기입 요령

갑 조사표 표지기입요령 (17 P. 참조) 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2) 을 품목조사표 기입 요령

가) (매중 매)

을 조사표에 대한 총 매수중 몇번째 매수인가를 기입한다.
즉 을 조사표를 4매 조사한 가구가 있다면 (매중 매), (매중 매), (매중 매), (매중 매)로 기입한다.

나) 부호 기입란

을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품목부호를 기입한다.

다) 품목 및 규격

조사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품목 및 규격을 기입하고 을 품목과 상이한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품목, 크기, 품질, 재료, 모양, 성능, 용도, 국산, 외국산등을 참고로 기입한다.

라) 보유수량

이 란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보유수량을 합하여 기입한다.

마) 합 계

각 품목의 보유수량을 총 합산하여 각 난별로 작성 기입한다.

3) 주택 부대시설 기입 요령

갑 조사표의 주택 부대시설 기입요령 (28 P. 참조) 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5. 조사표의 제출

가. 조사표의 정리

- 1)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조사표 표지 및 갑, 을 품목조사표와 주택 부대시설 조사표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를 조사가구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2) 표본번호의 부여
조사가 완료된 조사구는 가구명부의 가구순에 따라 표본번호를 조사구별로 두단위 숫자를 일련번호 순으로 갑 조사가구와 을 조사가구를 구분할 필요없이 가구명부 표본번호란에 기입한다. 기입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조사표 표지 가구번호 상단에 표본번호를 적색 볼펜으로 두단위 숫자로 기입한다.
- 3) 품목 부호 기입
갑 및 을 품목조사표와 주택 부대시설 조사표의 부호기입란에 품목 및 규격에 기입된 내용과 각 품목분류표의 품목 및 규격을 비교한 후 해당되는 품목부호를 적색 볼펜으로 기입한다.
- 4) (매중 매)란의 기입
갑 및 을 품목조사표의 사용매수에 따라 총 몇 매중 몇 번째 매수인가를 기입한다.

나. 조사표의 제출

- 1) 조사표의 정리가 완료되면 해당 가구명부와 함께 조사구별로 표본번호 순에 따라 철한다.
- 2) 철이 완료된 조사구는 즉시 해당 지도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특히 조사가 늦은 조사구라 하더라도 최종 조사표제출기일(4월 10일)내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6. 조사표내용검토요령

각 지도구 책임자는 조사가 완료된 조사구의 조사표와 해당 가구명부를 접수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내용검토를 하여야 한다.

가. 조사표 매수의 확인

- 1) 각 지도구 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는 가구명부와 조사담당자가 제출한 가구명부 및 조사표와 비교하여
- 2) 최초 선정된 표본가구 또는 조사불응가구에 대한 대체가구로 지정해 준 가구의 다른가구를 조사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한다.
- 3) 표본으로 지정된 (갑 또는 을 조사)가구가 누락되지 않았나 갑 또는 을 조사가구수가 가구명부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나. 조사표의 내용검토

1) 조사표 표지의 내용검토

- 가) 직업란을 산업 및 직업분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입하였는가?
- 나) 가입된 직업과 영농구분과 일치하는가?
- 다) 가구의 연간소득이 표지 뒷면의 가구연간 소득합계 및 가구소득에 관한 사항의 각 항목 합계와 일치하는가?
- 라) 가구 소재 주소를 통반까지 정확히 기입하였는가?
- 마) 주거구분 중 한곳에 ○표 되었는가?
- 바) 주거구분 중 「1. 자가」 및 「5. 주택이외 □자가」의 경우 주거용 건물란에 조사가 되었는가?

사) 주거구분 중 바) 항 이외의 경우 주거용 건물란에 조사된 것은 없는가?

아) 주거구분 중 「 1. 자가 」인 경우 ①전용주택 ②겸용주택중 한곳에 ○표 되었는가?

자) 주거구분 중 「 5. 주택이외 ①자가 」인 경우 ③주택이외란에 ○표 되었는가?

차) 주거구분 중 「 1. 자가 」 및 「 5. 주택이외 ①자가 」인 경우에만

(1) 건축구조 8개 항목중 한곳에만 ○표 하였는가?

(2) 연건평 및 대지면적 중 건물이 1층인 경우 연건평이 대지면적보다 많은 것은 없는가?

(3) 주거면적과 병용면적의 합이 연건평과 일치하는가?

(4) ①전용주택과 ③주택이외의 경우 병용면적이 기입된 것은 없는가?

(5) ②겸용주택의 경우 병용면적이 누락되지 않았는가?

(6) 자가사용과 타인사용 면적의 합이 병용면적과 일치하는가?

(7) 취득 또는 신축시기를 기입하였는가?

(8) 취득시의 신·구옥 구분중 ①신옥의 경우 취득시까지 경과년수가 기입된 것이 없는가?

(9) 취득시의 신·구옥 구분중 ①구옥의 경우 취득시까지 경과년수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10) 취득시의 신·구옥 구분을 현재 주택 상태에 따라 기입된 것은 없는가?

카) 거주지 이외의 주거용 건물란에 있어도 「 차) 」의 경우와 같이 내용검토를 한다.

2) 갑 및 을 품목조사표 내용검토요령

가) 품목분류표의 규격에 맞는 품목부호를 기입하였는가?

나) 품목 및 규격란을 품목분류표와 일치하도록 기입하였는가?

특히 다음의 경우를 정확히 기입하였는가?

(1) 품목 및 규격란에 금액으로 구분된 품목

(가) 갑 품 목

커튼, 자식품, 탁상시계, 손목시계, 전축, 녹음기, 카메라,
산데리아, 전기스탠드

(나) 을 품 목

종합셀, 커피셀, 핸드백, 지갑, 혁대, 안경, 브룩치

(2) 금액으로 수량을 과약하여 기입하는 품목

(가) 갑 품 목

기다테니스용품, 기타낚시용품, 기타등산용품, 사파이어, 진
주, 루비, 비취, 자수정, 연수정, 기타귀금속

(나) 을 품 목

기타죽제품, 기타프라스틱용기, 기타양은알미늄제품, 기타스
텐레스제품, 옷감, 기타문구용품, 장난감, 기타공구셀

(3) 갑품목은 국산, 외국산을 품목 및 규격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에어콘, 선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담요, 냉장고, 전기밥솥, 보
온밥통, 전기후타이팬, 믹서, 토스타, 까스레인지, 커피포트,
전기세탁기, 전기청소기, 재봉틀, 전기다리미, 전화기, 흑백
T.V, 라디오, 피아노, 바이올린, 테니스셀, 골프셀, 헤어드라

이, 전기면도기, 승용차

다) 이외에도 품목명, 크기, 품질, 재료, 모양, 성능, 용도등을 정확히 기입하였는가?

라) 위의 품목 및 규격에 따라 품목분류표에 명시된 품목부호를 정확히 기입하였는가?

마) 영업상 사용되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예 : 1. 음식점및주점-주방용기구 및 각종식기류

2. 여관업및하숙업-침구류

3. 농 가-삼, 낫, 곡괭이등 영농기구류

바) 갑품목 조사표의 구입상태란에 신품, 중고품을 현재상태에 따라 구분된 것은 없는가?

사) 다음품목은 골동품의 종류도 있는 것이므로 골동품이라고 판단되는 품목이 기입되지 않았는가?

병풍, 액자, 보석함, 장식품등

다. 내용검토가 완료된 조사구는 조사표 제출명세를 작성 소정기일 (4 월 15 일) 까지 조사표와 함께 중앙에 제출한다.

(38 p 조사표제출명세참조)

조 사 표 제 출 명 세

조사지역	조사구 번호	조사담당자 성명	조사표매수			비고
			갑조사표	을조사표	계	
합		계				

_____ 지도구 책임자 _____ ①

부 록

- I. 연 령 환 산 표
- II. 조 사 표 기 입 예 시
 - 1. 조 사 표 지 기 입 예 시
 - 2. 갑 품 목 조 사 표 기 입 예 시
 - 3. 을 품 목 조 사 표 기 입 예 시
 - 4. 주 택 부 대 시 설 기 입 예 시

연 령 조 표

1977.12.31 현재

만 연 령	서 기	간 지	띠	만 연 령	서 기	간 지	띠	만 연 령	서 기	간 지	띠	만 연 령	서 기	간 지	띠
	1978	무 오	말	24	1953	계 사	뱀	49	1928	무 진	용	74	1903	계 묘	토 끼
0	1977	정 사	뱀	25	1952	임 진	용	50	1927	정 묘	토 끼	75	1902	임 인	범
1	1976	병 진	용	26	1951	신 묘	토 끼	51	1926	병 인	범	76	1901	신 축	소
2	1975	을 묘	토 끼	27	1950	경 인	범	52	1925	을 축	소	77	1900	경 자	쥐
3	1974	갑 인	범	28	1949	기 축	소	53	1924	갑 자	쥐	78	1899	기 해	돼 지
4	1973	계 축	소	29	1948	무 자	쥐	54	1923	계 해	돼 지	79	1898	무 술	개
5	1972	임 자	쥐	30	1947	정 해	돼 지	55	1922	임 술	개	80	1897	정 유	닭
6	1971	신 해	돼 지	31	1946	병 술	개	56	1921	신 유	닭	81	1896	병 신	원숭이
7	1970	경 술	개	32	1945	을 유	닭	57	1920	경 신	원숭이	82	1895	을 미	양
8	1969	기 유	닭	33	1944	갑 신	원숭이	58	1919	기 미	양	83	1894	갑 오	말
9	1968	무 신	원숭이	34	1943	계 미	양	59	1918	무 오	말	84	1893	계 사	뱀
10	1967	정 미	양	35	1942	임 오	말	60	1917	정 사	뱀	85	1892	임 진	용
11	1966	병 오	갈	36	1941	신 사	뱀	61	1916	병 진	용	86	1891	신 묘	토 끼
12	1965	을 사	뱀	37	1940	경 진	용	62	1915	을 묘	토 끼	87	1890	경 인	범
13	1964	갑 진	용	38	1939	기 묘	토 끼	63	1914	갑 인	범	88	1889	기 축	소
14	1963	계 묘	토 끼	39	1938	무 인	범	64	1913	계 축	소	89	1888	무 자	쥐
15	1962	임 인	범	40	1937	정 축	소	65	1912	임 자	쥐	90	1887	정 해	돼 지
16	1961	신 축	소	41	1936	병 자	쥐	66	1911	신 해	돼 지	91	1886	병 술	개
17	1960	경 자	쥐	42	1935	을 해	돼 지	67	1910	경 술	개	92	1885	을 유	닭
18	1959	기 해	돼 지	43	1934	갑 술	개	68	1909	기 유	닭	93	1884	갑 신	원숭이
19	1958	무 술	개	44	1933	계 유	닭	69	1908	무 신	원숭이	94	1883	계 미	양
20	1957	정 유	닭	45	1932	임 신	원숭이	70	1907	정 미	양	95	1882	임 오	말
21	1956	병 신	원숭이	46	1931	신 미	양	71	1906	병 오	말	96	1881	신 사	뱀
22	1955	을 미	양	47	1930	경 오	말	72	1905	을 사	뱀	97	1880	경 진	용
23	1954	갑 오	말	48	1929	기 사	뱀	73	1904	갑 진	용	98	1879	기 묘	토 끼

1. 조사표 표치 기입 예시

지정통계
제21-4호

통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
본 기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977년 국부통계 조사를 위한 가계 자산 조사표(1.갑)

— 1977년 12월 31일 현재 —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영농구분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주직업(근무처 또는 자영사업명칭)	가구의 연간소득
058	12-3	①농가 ②비농가	06	만 40세	삼화월업(주건업) 주식회사 영업부 차량정비 계장	천만백만십만 만 천 3 3 2 0

가구소재주소

서울 ^시 서대문 ^구 시·군 불광 로·동 구·읍·면 가 103 번지 12 호 동·리 (4동 아파트 동 9반)

주거구분

① 자가 (주택)	2. 관공사택	3. 전 세	4. 월 세	5. 주택이외 ^① 자가 ^② 임차
-----------	---------	--------	--------	--

주거용건물 (주거구분에서 1 또는 5-①에 ○표하였으면)

(① 전용주택, ② 겸용주택, ③ 주택이외)

건축구조	연건평 및 대지면적	취득시기
① 천근콘크리트조	건물 2 층	취득 또는 신축시기 ※
② 연와조	연건평 30 평	19 67 년
③ 석조	주거면적 20 평	취득시의 신·구옥 구분
④ 블록조	병용면적 10 평	① 신옥 ② 구옥
⑤ 토벽조	자가사용 3 평	취득시까지의 경과년수(신옥제외)
⑥ 목조	타인사용 7 평	(지은지 몇년된집을 샀는가?)
⑦ 목골물탈조	대지면적 30 평	7 년
⑧ 간이목조 또는 간이목골물탈조		

조사에 관한 사항

조사표작성년월일	응답자성명	조사담당자성명	지도구책임자성명
1978년 3월 18일	가구주의(처) 박미자 ①	홍현옥 ①	이형백 ①

주의: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거주지이외의 주거용건물 소유 (자가인 경우에만)

I. ①전용주택, ②겸용주택, ③주택이외)

소재주소	서울 ①시대문 ②구 연희 / 로·동 동·리 (2 / 아파트 3 동 4 호)	
건축구조	연건평및대지면적	취득시기
①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 층	취득 또는 신축시기 ※
② 연 와 조	연건평 30 평	19 7 4 년
③ 석 조	주거면적 30 평	취득시의 신·구옥 구분 ① 신 옥 ② 구 옥
④ 블 록 조	비용면적 평	
⑤ 토 벽 조	자가사용 평	취득시까지의 경과년수(신옥제외) (지은지 몇년된 집을 샀는가?)
⑥ 목 조	타인사용 평	
⑦ 목 골 물 탈 조	대지면적 40 평	
⑧ 간 이 목 조 또는 간 이 목 골 물 탈 조		

II. ①전용주택, ②겸용주택, ③주택이외)

소재주소	서울 ①시 강남 ②구 잠실 4 로·동 동·리 (1243번지 91 호)	
건축구조	연건평및대지면적	취득시기
①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 층	취득 또는 신축시기 ※
② 연 와 조	연건평 13 평	19 7 7 년
③ 석 조	주거면적 13 평	취득시의 신·구옥 구분 ① 신 옥 ② 구 옥
④ 블 록 조	비용면적 평	
⑤ 토 벽 조	자가사용 평	취득시까지의 경과년수(신옥제외) (지은지 몇년된 집을 샀는가?)
⑥ 목 조	타인사용 평	
⑦ 목 골 물 탈 조	대지면적 평	
⑧ 간 이 목 조 또는 간 이 목 골 물 탈 조		

-44-

가구소득에 관한 사항

가구의연간소득합계 년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일 원
3 3 2 0 0 0 0 원

근로소득	가구주소득	봉급 월 150,000원	년 1,800,000 원	주사업소득 (농어업, 상업, 제조업, 자유업등)	월 원	년 원
	기타가구원소득	상여금 년 4 회	년 520,000 원	부업소득	월 30,000원	년 360,000 원
		봉급 월 60,000원	년 720,000 원	기타소득 (이자, 방세, 연금, 보조금 등)	방세 월 20,000원	년 240,000 원
		상여금 년 3 회	년 200,000 원			

가구지출에 관한 사항

월 215 000 원 연간지출합계 년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2 5 8 0 원